

2026학년도 2학기 해성초등학교 학습준비물 구입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견적제출)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 참가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으니, 본 공고서의 규격서 및 계약관련 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견적제출)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계약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견적(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견적제출)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 증여,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하지 않겠습니다.
-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계약 담당 공무원이 금품·향응·편의 제공 등을 요구할 때는 아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홈페이지: <http://www.cne.go.kr/> 충청남도교육청/전자민원창구/부패·공익신고
- 스마트폰 활용 신고: 스마트폰으로 QR코드 인식> 충남교육청/부패공익신고 이동
- 신고 전화: (감사관) 041) 640-7920~7965 (행정실) 041-430-7611

※ QR코드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건 명	2026학년도 2학기 해성초등학교 학습준비물 구입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품목 및 규격	[별첨] 학습준비물 구매 목록 참조		
기 초 금 액	금17,326,580원(부가가치세 포함)		
납 품 장 소	[별첨] 계약특수조건 참조(각 학년연구실에 학년, 반을 구분하여 납품)		
납 품 기 한	계약체결일로부터 20일 이내		
견 적 방 법	전자계약, 소액수의(총액)견적, 지역제한(충청남도 당진시), 업종제한, 공동수급 불허, 지사투찰 불허		
낙찰자 결정	제한적 최저가 낙찰		
견적접수개시	2026.8.7.(금) 10:00	견적접수마감	2026.8.11.(화) 10:00
개 찰 일 시	2026.8.11.(화) 11:00	개 찰 장 소	해성초등학교 견적집행관 PC
기 타 사 항	본 견적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별첨] 계약특수조건을 숙지한 후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규격에 관한 의문 사항은 담당자에게 반드시 확인)		

2. 견적서 제출방법

- 별도의 현품 설명은 생략하므로 별첨의 학습준비물 구매 목록을 반드시 숙지하고 견적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견적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의한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한번 제출된 견적서의 변경 제출은 불가하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의서」 제8조에 의한 견적 취소는 가능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장애로 입찰이 연기된 경우, 동 시스템 장애 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 본 사업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견적)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견적) 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견적)결과 계약 상대방이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견적서 제출여부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전자견적 제출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나. **문구업 또는 학습준비물 도·소매에 관하여 사업자등록을 필하고 해당 제품을 제조 또는 판매하는 자**로서, 견적 공고일 전일부터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충청남도 당진시**에 두고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유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 다.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하며,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미등록업체는 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입찰자용)에 동의하고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참가등록을 하여야 함) 본 견적은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를 참고하여 참가해주시기 바랍니다.
- 라. 견적 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고의로 참가하거나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견적제출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될 수 있습니다.
- 마. 낙찰일 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운용요령 <별표1>의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자 및 충청남도교육청 또는 산하기관에서 수의계약 결격업체 처분중인 업체는 투찰 및 계약할 수 없습니다.
- 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제10조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의 확인사항에 저촉되지 않은 업체이어야 합니다.[참조서식]
- 사.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제95조의2에 따른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계약의 대가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 완납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아. 학교에서 제시한 내역서(규격과 동등 이상 물품)에 따라 납품이 가능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4. 예정가격 작성 및 계약상대자 결정

- 가. 예정가격 작성 및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3% 금액의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고, 견적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천한 결과에 따라 가장 많이 선택된 순으로 4개를 산출 평균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합니다.
- 나. 계약상대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규정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90%)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서에 따라 수의계약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되지 않는 자로 합니다.

- 다. 동일가격 견적 제출에 대해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거 추첨(동일가격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 이용)에 의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 라. 견적 결과는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마.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상대자 결정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10/100이상의 금액에 해당하는 현금 또는 계약보증보험증권 등 제반서류(산출내역서 등)를 제출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계약 포기로 간주 처리합니다.
- 바. 물품의 품질 저하 방지를 위해 낙찰자 외의 타인에게 위임 또는 양도하여 납품할 수 없습니다.
- 사. 개찰을 실시하여 낙찰자가 없을 때는 재견적을 실시하며, 새로 정한 시간 내에 전자조달시스템에 재접속하여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때 재견적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견적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5. 견적제출의 무효

- 가. 제출된 견적서의 무효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제12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릅니다.
- 나.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견적)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견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견적)로 처리됩니다.
- 다. 입찰(견적)참가등록상의 상호(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법인의 명칭)의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변경등록하고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견적서 제출에 참여한 견적서 제출은 무효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6. 청렴계약 이행 준수

- 가. 본 건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이므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를」 제6조의2(청렴서약제)에 의거하여 견적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청렴서약서에 서명하여 우리학교에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7. 기타사항

가. 견적 참가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물품계약 일반조건」, 「청렴계약 특수조건」, 기타 견적 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견적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견적에 참가희망 업체의 전산장비 등 준비부족으로 인하여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본 공고문은 ‘나라장터’의 「입찰정보-물품-공고현황조회」에도 게재되며, 예비가격 기초금액 및 입찰결과에 관한 정보는 ‘나라장터’의 「입찰정보-물품-기초/예비금액조회, 개찰결과 조회」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라. 본 공고문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예규, 관련 규정에서 정한 사항에 따릅니다.

마. 관련 문의

- 1) 물품 규격 등 문의: 학습준비물 담당교사 (☎041-430-7610)
- 2) 기타 입찰 공고에 관한 사항 문의: 행정실 계약담당 주무관(☎041-430-7611)
- 3) G2B시스템에 관한 사항 문의: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2026. 8. 5.

혜 성 초 등 학 교 장

[참조]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4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공사 [] 용역 [] 물품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개인 [] 법인 [] 단체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①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예 [] 아니오
②	계약 업무를 법령상 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예 [] 아니오
③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예 [] 아니오
④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예 [] 아니오
⑤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예 [] 아니오
⑥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예 [] 아니오
⑦	①부터 ⑥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예 [] 아니오
⑧	①부터 ⑥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①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②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③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예 [] 아니오
발주자 확인 사항	계약상대자가 ①부터 ⑥까지 중 어느 하나에 “예”를 답변한 경우,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명뿐인 경우*로서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과의 수의계약이 허용되는 경우인가?	[] 예 [] 아니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기관법인·단체명)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